

외국법인연락사무소현황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관리번호	처리기간 즉시
------	---------

제출대상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--------	---------------

1. 기본사항

①상호(법인명)	②고유번호	③국 적
④소 재 지	⑤전화번호	⑥전자우편주소
⑦대표자 성명	⑧주민등록번호	⑨휴대전화
외국본점	⑩법인명	⑪주업종
	⑫소재지	⑬자본금(\$, 기타)

2. 임차 현황

(단위: m², 원)

⑭면 적	⑮보증금	⑯월세 (부가세포함)	임대인 인적사항	
			⑰법인명(성명)	⑱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

3. 직원 현황

(단위: 명, 원)

직원 수			국내에서 지급한 급여		국외에서 지급한 급여		⑳가입한 납세조합
⑲계 (⑳+㉑)	㉒내국인	㉓외국인	㉔인원	㉕지급총액	㉖인원	㉗지급총액	

4. 운영자금 현황

(단위: 원)

조달내역				지출내역			
㉚계 (㉛+㉜+㉝)	㉞본사	㉟관계회사	㊱기타	㉡계 (㉢+㉣+㉤)	㉥급여	㉦임차료	㉧기타

5.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

(단위: 원)

㉨거래금액 합 계	주요 국내 거래처 현황					
	㉩상호	㉪사업자등록번호	㉫소재지	㉬거래구분	㉭주요품목	㉮거래금액
				매출[] 매입[]		
				매출[] 매입[]		
				매출[] 매입[]		

6. 본점의 국내투자 법인, 지점, 계약대리점 현황

(단위: 원, %)

㉯구분	㉺상호	㉻사업자등록번호	㉼소재지	㉽투자금액	㉾지분율	㉿업종
국내투자법인[] 지점[] 기타[]						
국내투자법인[] 지점[] 기타[]						
국내투자법인[] 지점[] 기타[]						

7. 계산서·세금계산서·신용카드 등 수취금액

(단위: 원)

합 계	매입 계산서		매입 세금계산서		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매입금액
	전자계산서	전자계산서 외	전자세금계산서	전자세금계산서 외	

8. 주요업무내용

첨부서류(해당 내용 표기)	제출인은 「법인세법」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제출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제출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	
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						
☐ 전자신고 ☐ 전산매체	년 월 일 제출인: (서명 또는 인)					
☐ 서면 ☐ 해당 없음						
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	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명세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	
☐ 전자신고 ☐ 전산매체						
☐ 서면 ☐ 해당 없음	세무대리인: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					
세무대리인	성 명		사업자등록번호		전화번호	
첨부서류	1.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	수수료				
	2.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		없 음			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」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 작성하며, 제출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.

1. “1. 기본사항”에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및 외국법인 본점의 현황을 적습니다.

1. ② 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.

2. ⑧ :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
3. ㉓ : 「소득세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(일용근로소득 포함)으로서 연락사무소가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.

4. ㉔ :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으로서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.

5. ㉕ : 국외근로소득(㉔)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, 가입한 납세조합명을 적습니다.

6. “4. 운영자금 현황”에는 제출대상기간 동안 연락사무소의 자금운영에 관한 내역을 적습니다.

1. “5.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”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 외국법인 본점의 전체 국내거래금액 합계 및 주요 거래처의 기 본현황과 거래내역에 대하여 적습니다.

1. ㉙ : 외국법인 본점이 신고대상기간 동안 국내거래처와 거래한 연간 총 거래금액을 적습니다.

2. ㉚ : 외국법인 본점을 기준으로 매출, 매입 해당여부를 []에 √ 표를 합니다.

7. ㉜ :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재화, 기술, 용역제공 등으로 적습니다.

8. ㉝ : 다음 구분에 따라 []에 √ 표를 합니다.

가. 국내투자법인이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을 말합니다.

나. 지점 : 「외국환거래규정」(기획재정부고시) 제9-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점을 말합니다.

9. ㉞, ㉟ : ㉝의 구분이 국내투자법인인 경우 해당 투자금액, 지분율을 적습니다.

10. “7. 계산서·세금계산서·신용카드 등 수취금액란”

가. 제출대상기간의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,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,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나. “전자계산서” 및 “전자세금계산서”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11. “8. 주요업무내용”에는 연락사무소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(예: 업무연락, 시장조사, 자료수집 등)